

01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때에는 동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일반과세자

앞에서 말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일반과세 사업자를 말한다.

-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 입장권 발행사업자
-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영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 확대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의 동물 진료용역)
- 교육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공제요건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5년간 보관할 것. 다음의 경우에는 매출전표 등을 보관한 것으로 본다.

- ❶ 신용카드 등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
- ❷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



공제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사업과 관련해서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 여기서 신용카드 등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결제대행업체 통한 거래 포함),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 현금영수증이 포함된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해서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인터넷 오픈마켓(G마켓, 옥션 등)에서 신용카드로 구입 또는 판매한 경우 공제여부는 해당 오픈마켓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서 각 신용카드사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결제를 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오픈마켓 사업자별로 각 신용카드사와의 결제대행계약 체결여부가 다르므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해당 카드 결제분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서 결제대행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에서 발급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용으로 정정이 가능하다.

사업자 본인·가족 및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사용분도 공제가 가능하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유대 등)·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가사용 매입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수취한 경우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 항공권·KTX·고속버스·택시요금, 미용·육탕·유사서비스업, 공연(영화)입장권 등 구입비용
- 과세되는 쌍꺼풀 등 성형수술, 수의사의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 및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제도란 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공인인증서로 등록)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5개의 신용카드를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법인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사업용 신용카드에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용카드 거래 자료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이 조회할 수 있다.(신용카드사로부터 매분기 익월 10일에 통보받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수록)

조회 화면에서 거래처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분 중 공제·불공제 대상을 체크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가 아닌 등록된 신용카드로 매입한 전체 합계금액을 기재한 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 단, 개인사업자의 가족카드나 종업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 합계를 제출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운전자는 별도의 등록 없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가 아닌 복지카드로 매입한 전체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된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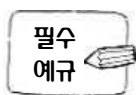
- 주차요금을 매월 정산하여 받는 경우
- 카지노 입장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 지하철 정기관 · 식권을 판매하는 경우 및 식대를 월 합계로 받는 경우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
-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해서 소급발급 할 수 없음)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재화·용역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 외교통상부가 받는 여권발급수수료 및 문화관광체육부가 받는 출국납부금
-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주차 위반 등)
- 여행알선용역에 있어 여행알선 수수료 이외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된 선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할인해서 구입한 상품권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초과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150, 2012.02.15)

사업자가 할인에서 구입한 상품권으로 대영할인점에서 재화를 구입하면서 해당 상품권의 액면 금액 상당액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로서 상품권을 구입한 거래와 재화를 구입한 거래가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상품권 구입가액)을 초과해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전자세원 과-554, 2009.08.27)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후불교통카드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법규부가 2009-0167, 2009. 5.25)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우불교통카드 또는 우불전자카드로 수납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동 영수증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며,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사업자에게 동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거래내역을 전송받는 경우(전자세원과-394, 2009. 2.11)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자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되거나,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않아서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아서 보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여행알선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전자세원과-1682, 2008.11. 5)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여행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해서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수수료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무기명 선불카드로 결제한 경우(상담3팀-658, 2008. 3.2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무기명식)로서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 등을 등록해서 인증을 받은 후 당해 선불카드로 실지명어가 확인된 선불카드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 선불카드영수증에 해당한다.

전자금융업 등록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부가가치세제과-0143, 2008. 5.2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



영업법에서 규정하는 결계대행업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점매입 재화의 대가를 본점명의로 카드로 결제한 경우(상담3팀-2240, 2007.08.10)

종괄납부 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받고 본점 명의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은 재화를 공급받은 각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다만, 본점에서 계약·발주에서 본점명의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재화를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구분표시 되지 않은 경우(상담3팀-788, 2007.03.14)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말한다.

월합계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상담3팀-733, 2007.03.07)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으로 월합계에서 영수증을 발급했을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 신용카드의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상담3팀 - 731, 2006.04.19)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는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전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타인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불가(상담3팀 - 1823, 2004.09.02)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시기에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매입관련 신용카드 결제 분 매입세액공제(상담3팀-438, 2004. 03. 08)

목록 · 이발 ·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해서 영위하는 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와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 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와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 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복리후생목적의 소비 및 사무용품의 구입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여부(서삼46015-10934, 2002.05.31)

제조업자가 도 · 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제조업의 원 · 부자재가 아니며, 재 판매에도 사용되지 않는 복리후생 목적의 소비용품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입한 당해 재와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종업원 카드로 사용한 신용카드의 매입세액공제(상담3팀-1599, 2004. 8. 7)

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의 등록번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된다.

가족명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상담3팀-899, 2004. 5. 11)

일반과세자로부터 재와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로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득세법 제162조의 3④, 소득세법 영210의3⑨,⑩)

아래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외)에는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비 사업자인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경우에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무기명 발급가능).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구 분     | 업 종                                                                                                                                                                      |
|---------|--------------------------------------------------------------------------------------------------------------------------------------------------------------------------|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 보 건 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 기 타 업 종 | 일반고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음식점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영업을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